

목 차

1 총무팀

1. 「2025년도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신청 및 홍보	1
2.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안내	1
3. 「축령산 편백숲 산소축제」 홍보	2
4. 8월 어린이 공연 드로잉 매직쇼 「크레용용」 홍보	2
5. 구석구석 문화배달 「숲 속 여가」 홍보	3
6.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및 사용 홍보	3
7. 7월 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하이파이브」 홍보	4
8. 방문의 해 「쏠쏠한 장성여행Ⅱ」 모집 신청 안내	4
9.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5
10. 무더위쉼터 냉방기기 수리 지원 안내	6
11. 마을 관련 행사 등 알림 협조	6

2 맞춤형 복지팀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신청 홍보	7
2 2025년도 디딤씨앗통장 홍보	7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	8
4. 기초연금 소득·재산 등 변동에 대한 신고 의무 안내	8
5. 취약계층 폭염 대비 홍보 안내	9
6.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안내	9

3 산업팀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 예방 홍보	10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류형상품권 신청 접수 계획 안내	11
3.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홍보	12
4.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홍보	13
5. 산업안전보건법(폭염·한파 보건조치사항 신설) 개정 알림	13
6. 동계 사료작물 종자 신청	14
7. 나라꽃 무궁화 그리기 공모전	14
8. 산사태 발생시 대피요령	15
9. 전략작물, 기본형 공익 직불금 등록정보 공개 배너 게시 안내	16
10. 기본형 공익직불 농업인 의무교육 자동전화교육 운영 안내	16
11. 집중호우 피해농가 전략작물(하계) 재배 이행 기준 완화 안내	17
12.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안내	18
13. 하계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 계획 안내	18
14.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19

4 민원팀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20
2.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안내	21

5 보건지소

1. 지역사회 건강조사 안내	22
2.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안내	23
3.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안내	23

별첨 1	민생소비쿠폰 지급 안내(1차)	24
------	------------------------	----

별첨 2	폭염 대비 행동 요령 포스터	25
------	-----------------------	----

별첨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7
------	----------------------------------	----

별첨 4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 안내	28
------	-------------------------------	----

별첨 5	전략작물, 기본형 공익 직불금 등록정보 접속 방법	29
------	-----------------------------------	----

별첨 6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안내	31
------	---------------------------	----

별첨 7	그린바이오 기업신고제 홍보	47
------	----------------------	----

별첨 8	2025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49
------	--------------------------	----

총무팀(11건)

1

「2025년도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신청 및 홍보

(담당자 : 차은주 ☎ 390-7913)

- 신청기간 : 2025. 8. 4. ~ 9. 5. * 보급시기: 2025년 10~11월
- 사업명 : 2024년도 사랑의 그린PC(중고) 보급
- 신청방법 : **총무팀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개인)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단체)장애인 단체 및 교육기관
- 수량 : 5대
- 지원장비 : 컴퓨터(I5 6세대 이상, SSD 120GB), 모니터 22인치 이상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홍보 바랍니다.

2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안내

(담당자 : 차은주 ☎ 390-7913)

- 일시 : 2025. 8. 7.(목) 16:00 ~ 18: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운영방법 : 현장 및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 강연안내 : 정지훈 음악평론가
 - 강연주제 : 유럽 음악 페스티벌의 현장을 가다
- 참여방법
 - 현장강연 : 누구나 참여(선착순 입장)
 - 온라인 강연 : 누구나 시청(장성군 공식 유튜브)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홍보바랍니다.

3

「축령산 편백숲 산소축제」 홍보

(담당자 : 차은주 ☎ 390-7913)

- 일 시 : 2025. 8. 2.(토) ~ 8. 3.(일) 12:30 ~ 17:30
- 장 소 : 서삼면 축령산 모암지구 일원
- 주 제 : 치유의 숲과 만나는 한여름의 향연
- 내 용
 - 개막 공연(퓨전국악), 숲속 음악회(요들송, 대금 공연 등)
 - 편백팔찌 만들기, 향기 주머니 만들기, 무궁화 디퓨저 만들기, 야생꽃차만들기, 편백칩 희망이야기 등
 -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홍보 바랍니다.

4

8월 어린이 공연 드로잉 매직쇼 「크레용용」 홍보

(담당자 : 차은주 ☎ 390-7913)

- 공 연 일 : 2025. 8. 9.(토) 11시, 14시, 16시(3회 공연)
 - 공 연 장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예 매 : 2025. 7. 31.(목) 오전 9시부터 / 1인당 4매
 - 인 터 넷 : 장성군청 누리집 문화예술회관 접속 예약
 - 전 화 : 잔여좌석 확인 후 예약(390-8599, 390-8578)
 - 현장예매 : 장성군민에 한함(반드시 신분증 지참,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기 간 : 25. 7. 31.(목) 18시 ~ 20시 / 8. 1.(금) 9시 ~ 14시(선착순)
 - 장 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로비
 - 관람연령 : 24개월이상 관람가
 - 관 랐 료 : 4,000원(어린이, 학생, 경로당, 장애인 등 50% 할인)
-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홍보 바랍니다.

5

구석구석 문화배달 「숲 속 여가」 홍보

(담당자 : 차은주 ☎ 390-7913)

○ 숲 속 여가 「기억 : 삶의 조각들」

- 일 시 : 2025. 8. 2.(토) 14:30 ~ 17:30
- 장 소 : 서삼면 축령산 모암지구 일원 * 우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참 여 : 군민, 관광객 등
- 내 용
 - 숲속 문화공감 : <숲 속 음악회> 아멜리 앙상블, <숲 속 영화관> 교실안의 야크
 - 숲속 아뜰리에 : 야생화 엽서 색칠하기, 무궁화 디퓨저 만들기
 - 숲속 힐링산책 : 마실마켓, 축령산 사진전(조경원 작가)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홍보 바랍니다.

6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및 사용 홍보

(담당자 : 차은주 ☎ 390-7913)

- 발급기간 : 2025. 11. 30.(일)까지 * 방문 발급은 11.28.(금)까지
- 이용기간 : 2025. 12. 31.(수)까지
-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1인당 14만원
- 발급방법 : 총무팀 방문 신청, 누리집, 모바일앱

※카드 소지자는 전화ARS(1544-3412)로 재충전 가능

◆ 협조사항 : 해당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7

7월 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하이파이브」 홍보

(담당자 : 차은주 ☎ 390-7913)

- 상 영 일 : 2025. 7. 29.(화) 19:00 ~ (119분)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람연령 : 15세 관람가
- 관 랐 료 : 선착순 무료입장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홍보 바랍니다.

8

방문의 해 이벤트 「쏠쏠한 장성여행Ⅱ」 안내

(담당자 : 차은주 ☎ 390-7913)

- 기 간 : 2025. 7. ~ 9.
- 신청방법 : '장성방문의 해' 홈페이지 > 「쏠쏠한 장성여행」 제출
- 대 상 : 장성을 여행하고자 하는 타지역 관광객
- 주요내용 : 관내 숙박·식당·카페 등 여행경비 최대 50% 지원
-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최대 20만원 내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 운영절차

단 계	여행 준비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경비 지원(郡)
내 용	▶ 여행계획 수립	⇒ ① 여행 계획서 제출(사전) ② 장성여행 실시 ③ 결과 보고서 제출(사후) ※ 여행종료 10일 이내	⇒ ▶ 제출서류 검토 ▶ 경비 지급

◆ 협조사항 : 장성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차은주 ☎ 390-7913)

- 신청기간 : 2025. 6. 1. 이후 응시한 시험에 대하여 응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총무팀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연령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1976.1.1.~2007.12.31.)
 - 주소 : 응시일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장성군인 자
- 신청서류
 - 응시료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5년간 주소 변동이력 포함, 10일 이내 발급본)
 - 응시 사실 증명서류(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응시사실 확인서, 성적표, 합격증 등)
 - * 접수증 등 실제로 시험에 응시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 불가
 - 응시료 결제 영수증(실제 신청인이 부담한 비용, 결제금액 표기)
 - 통장사본(응시자 본인 명의)
- 지원분야 : 어학·한국사, 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

구분	응시료 지원 시험 종류	비고
어학	토익, 토익스피킹, 토플, 아이엘츠, 오픽, 텡스, 지텔프, 플렉스, JPT, JLPT, HSK, TSC, 기타 공인 외국어시험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심화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등	

- 2025. 6. 1. 이후 실시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자격증 취득(합격) 여부 무관하며 응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지원한도 : 1인당 연 2회,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
-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이정현 ☎ 390-7912)

- 신청기한 : 2025. 7. 25.(금)까지
- 신청방법 : **총무팀**
- 사업대상 : **무더위쉼터 19개소**
- 집행기준 : 무더위 쉼터 내 냉방기기 냉매 충전 및 기능점검
- ◆ 협조사항 : 점검이 필요한 마을은 신청바랍니다.

(담당자 : 총무팀장 ☎ 390-7911)

- 마을 총회 등 각종 회의, 단체 관광, 잔치 등
- 주요인사 방문, 각종 미담(기부, 자원봉사), 애경사, 각종 행사 등
-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사항(화재, 산불, 교통사고)
- ◆ 협조사항 : 각종 마을행사 시 총무팀 또는 마을 담당직원에게 연락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6건)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신청 홍보

(담당자 : 김현숙 ☎ 390-7916)

- 신청기간 : 연중(사업 종료 시)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 제외대상
 - 동 사업(난방)으로 수혜 이력이 2년 이내 있는 가구
 - 주거급여 대상자 중「자가」가구
 - 공공임대 · 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
- 지원내용 : 단열공사, 창호시공, 노후 보일러 교체
 - ※ 보일러 설치에 전기, 수도 설비 및 연료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 주 관 : 한국에너지재단
- ◆ 협조사항 : 안내 및 홍보 바랍니다.

2

2025년도 디딤씨앗통장 홍보

(담당자 : 최 율 ☎ 390-7917)

- 대 상 : 17세 이하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 포함)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보호자 동행)
- 내 용 :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준비금 지원
 - 매 월 아동 적립금액의 2배 지원(10만원 한도)
 - 만 18세 이후 자립용도(학자금, 취업준비, 결혼자금 등)로 적립금 사용
-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바랍니다.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 최 율 ☎ 390-7917)

- 신청기간 : 2025. 1. ~ 12. 24.
- 지원대상 :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월 14,000원(국민행복카드 충전)
-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등) 방문 혹은 온라인
 - 방 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주소 무관)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 ◆ 협조사항 : 여성청소년들에게 적극 홍보바랍니다.

4

기초연금 소득·재산 등 변동에 대한 신고 의무 안내

(담당자 : 최 율 ☎ 390-7917)

- 기 간 : 연중
- 내 용

【 신고해야 할 주요 변동사항(법 제18조) 】

- 세대 구성 등 인적사항 변동
 - 사망, 결혼·이혼, 국적상실, 국외체류·이주, 행방불명, 실종 등
-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사항 변동
 - 소득: 취업, 퇴직(실업), 사업자등록(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수령
 - 재산: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채권, 보험 등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주의사항
 - 의무위반(허위신고 포함)시 급여 중지, 환수와 더불어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
-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바랍니다.

5

취약계층 폭염 대비 홍보 안내

※ [별첨 1] 참고

(담당자 : 최 울 ☎ 390-7917)

- 폭염 경보시 경로당 무더위 쉼터 야간운영 등 적극 개방 홍보
- 취약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유도
 - 취약시간대(12:00 ~ 17:00)에는 야외활동 자제 및 휴식 유도
 - 폭염특보(경보·주의보) 발효 시 외부활동(농작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방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 협조사항 : 폭염 대비를 위한 마을방송 적극적 활용 및 취약 노인 폭염 피해 발생 시 연락 바랍니다.

6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안내

(담당자 : 김현숙 ☎ 390-7916)

- 기 간 : 연중
- 발굴방법 : 이장,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관리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등과 함께 대상가구 방문 실태확인
- 발굴기준
 -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
 - 행복e음 시스템 내 사례관리대상자 등 위기가구
 - ※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 · 차상위계층 중지 및 탈락가구
 -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 기타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등
- 지원내용
 - 위기사유에 따른 긴급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등 공적급여 지원
 - 생활불편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복지지원 안내
-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 시 신고 바랍니다.

산업팀(14건)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 예방 홍보

(담당자 : 이현진 ☎ 390-7919)

○ 내 용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 주의
- 문자·카톡으로 온 인터넷주소 절대 누르지 마세요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스팸문자를 주의하세요!

정부 및 카드사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께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온라인 센터(<https://...>)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urrl.kr/25yp3q>)

1. 스미싱 문자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문자 뒤에 인터넷주소가 있으면 정상 문자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2.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마세요!

* 스미싱이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후 이용자가 앱 설치 또는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신고전화 118 상담센터

◆ 협조사항 : 주민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이현진 ☎ 390-7919)

○ 내 용 : 8월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 중

지류형상품권(장성사랑상품권 종이)이 배부됨에 따라 마
을별 접수 및 지급 ※ [별첨 2] 참고

○ 접수장소 : 면사무소 다목적실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원칙(신분증 지참)

※ 대리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 필요서류 : 대상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상자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등

○ 마을별 접수 일정

일 자	시 간		마 을	비고
2025.8.4.(월)	오전	09:00~12:00	남 부	
	오후	13:00~15:00	북 부	
		15:00~16:30	갑 동	
		16:30~18:00	신 흥	
2025.8.5.(화)	오전	09:00~10:30	박 산	
		10:30~12:00	오 산 1	
	오후	13:00~14:00	오 산 2	
		14:00~15:30	월 계 1	
		15:30~17:00	월 계 2	
2025.8.6.(수)	오전	17:00~18:00	월 계 3	
		09:00~10:00	성 산 1	
		10:00~11:00	성 산 2	
	오후	11:00~12:00	성 덕 1	
		13:00~15:00	성 덕 2	
		15:00~17:00	문 암 1	
		17:00~18:00	문 암 2	

○ 요청사항 : 거동불편으로 면 방문이 힘들어 현장방문 요청하실분은
2025. 7. 30.(수)까지 산업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주민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이현진 ☎ 390-7919)

○ 신청기간 : 2025. 2. 17. ~ 2025. 12. 31.

※ [별첨 3]

참고

○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비율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유형	지원비율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구매금액 30% 30만원 한도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구매금액 15% 3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참고사항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제품의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시행일이 적용기준일 이후인 경우만 지원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냉장고	1	‘18. 4.1	진공청소기 (유선)	1~3	‘19. 1.1
김치냉장고	1	‘17. 7.1			
에어컨	벽걸이	1	공기청정기	1	‘18. 1.1
	그 외	1~3			
세탁기	일반	1~2	TV	1	‘18. 1.1
	드럼	1			
전기밥솥	1	‘18. 7.1	제습기	1	‘16.10.1
			의류건조기	1	‘20. 3.1
전기밥솥	1	‘18. 4.1.	식기세척기	1	‘25. 1.1

○ 문의처 : ☎ 1551-1212(한국전력공사 콜센터)

◆ 협조사항 : 지원 대상자분들께 홍보 및 안내 바랍니다.

4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홍보

(담당자 : 이현진 ☎ 390-7919)

- 신청기한 : 2025. 11. 28.(금) 18:00까지
 -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지원대상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 24)
- 지원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된 카드로 지급(25.12.31.까지 사용)
- 사 용 처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 문 의 처 : ☎ 1533-0600(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 협조사항 : 소상공인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폭염·한파 보건조치사항 신설) 개정 알림

(담당자 : 이현진 ☎ 390-7919)

- 주요내용 : 폭염·한파로 인해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
- 신설내용 ※ [별첨 4] 참고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시행일: '25.6.1.)

*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

◆ 협조사항 : 주민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

6

동계 사료작물 종자 신청

(담당자 : 산업팀장 ☎ 390-7918)

- 신청기간 : 2025. 9. 12.(금)까지
- 신청방법 : **북일면 산업팀(7.23.~8.14.) / 장성축협(8.18.~9.12.)**
- 종자종류 :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기타
- 지원비율 : 보조 30%, 자담 70%
- 파 종 량 : 3,300㎡(1,000평)당 종자 20kg 1포
- 공급기관 : 장성축협(공급시기 9월 중순까지)
- ◆ 협조사항 : 희망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7

나라꽃 무궁화 그리기 공모전

(담당자 : 산업팀장 ☎ 390-7918)

- 공모기간 : 2025. 7. 16.(수) ~ 8. 1.(금) 15:00까지
- 공모주제 : 광복 80년을 맞아 무궁화를 주제로 자유롭게 표현한 그림
 - 장성무궁화공원, 무궁화 전망대의 우수성을 잘 표현한 그림
 -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답고 우아함과 애국심 고취, 정서순화를 표현한 그림
 - 광복80주년과 무궁화를 아름답게 표현한 그림 등
- 참가대상 : 장성군 초 · 중 · 고등학생
- 공모규모 : 총 18점
- 결과발표 : 2025. 8. 5.(화) 예정
 -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및 입상자 개별 통보
- 제한사항 : 타 공모전에 출품하지 않은 본인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 ◆ 협조사항 :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주민분들에게 홍보 바랍니다.

(담당자 : 산업팀장 ☎ 390-7918)

산사태 발생 시

“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 가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 하세요 ”

STEP 1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대피할 수 없어 건물 안에 머무는 경우 가능한 건물에서 가장 높은 층, 산과 멀리있는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STEP 2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운전 중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저속운행하며, 산사태 위험구간을 우회하여 신속하게 빠져나갑니다.



STEP 3

하천이나 강을 건너야 하는 경우

무리하여 건너지 않고 인근의 튼튼한 건물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STEP 4

등산 중일 경우

산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므로 대피할 때 산사태 방향과 반대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협조사항 : 주민분들에게 홍보 및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최은유 ☎ 390-7920)

○ 공개기한

- 전략작물직불금 : 2025. 7. 21.(월) ~ 2025. 8. 4.(월)
- 기본형공익직불금 : 2025. 7. 21.(월) ~ 2025. 8. 6.(수)

○ 대상정보 : 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 지번, 등록면적, 직불신청유형 등

○ 공개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에 공개

- 본인인증 후 수령자의 성명 또는 농지 지번으로 조회하여 열람 가능

○ 접속방법 : ※ [별첨 5] 참고

◆ 협조사항 : 농업인 및 농업법인분들에게 홍보 바랍니다.

(담당자 : 최은유 ☎ 390-7920)

○ 교육기간 : 2025. 7. 16.(수) ~ 8. 29.(금)○ 교육방법 : **개인별 전화 교육**

○ 교육대상 : 70세 이상 농업인(1955년생 포함하여 이전 출생)

- * 정규과정 의무 이수자(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제외

○ 교육방식 : (농관원) 교육전화 발신 → (농업인) 5분간 전화 청취
→ (Agrix)이수처리 및 이수확인 문자 발송

-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끝까지 듣지 못한 경우, 다시 전화(☎1644-3656)하여 재수강 할 경우 이수 처리
- 사전에 전화(☎1644-3656)하여 자동 전화 교육 음원을 들은 경우에도 이수 처리

◆ 협조사항 :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바랍니다.

(담당자 : 최은유 ☎ 390-7920)

- 신고기간 : 2025. 7. 1.(화) ~ 8. 29.(금)
- 신청방법 :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피해 등록신청서, 자연재해 피해사실 증빙자료(농업재해상황보고 자료,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 농지 및 농작물 피해사진 자료 등)
- 적용범위 : 전략작물직불금 대상으로 등록한 농경지, 농작물(두류, 조사료, 가루쌀)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지원방안 : 전략직불 등록농지 중 재해로 인한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 완화
 - 유형① : 작물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 상태가 아니어도 직불금 지급
 - 유형② : 작목 전환 또는 경작 중지시 시군 판단하에 직불금 지급 가능

구분	피해 수준	적용단가	금액
유형①	■ 재파종·보식 등을 통해 해당 작물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해당품목 단가	가루쌀두류 200~400만원/ha, 옥수수·깨 100만원/ha, 조사료 500만원/ha
유형②	■ 작목전환(타 전략작물, 일반작물) 또는 경작중지하는 경우	전환품목 단가 또는 일반품목 단가	가루쌀두류 200~400만원/ha, 옥수수·깨 100만원/ha, 조사료 50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협조사항 : 전략작물(하계)신청인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입은 농가 분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12

하계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 계획 안내

(담당자 : 최은유 ☎ 390-7920)

- 지도 및 단속기간 : 2025. 7. 28.(월) ~ 8. 15.(금) ※ [별첨 6] 참고

- 지도 및 단속대상 : 주요 관광지 주변 농산물 판매처 등
- 지도 및 단속내용 :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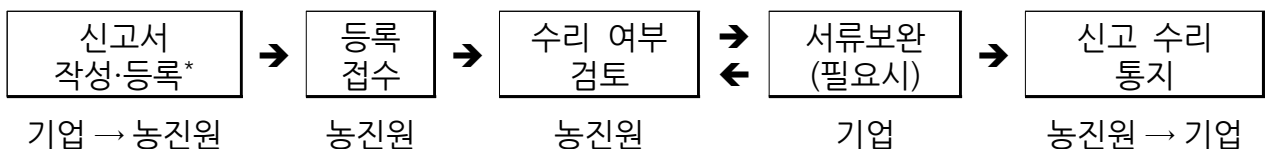
◆ 협조사항 : 관내 식당 및 농산물 판매처 주민들에게 안내 및 홍보 바랍니다.

13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안내

(담당자 : 최은유 ☎ 390-7920)

- 운영시기 : 2025. 3. 4. ~ 계속 ※ [별첨 7] 참고
- 신고대상 : 그린바이오산업 기업
- 접수방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고제 전용 웹사이트 접수
- 농진원 누리집 → 알림창 확인 → 신고제 전용 QR코드 또는 URL 접속 → 신고서 작성
- 신고절차



○ 주요내용

- 최초신고 :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서는 ①사업자 명칭·주소, ②설립 연월일, ③신고 연월일을 포함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갱신신고 : 신고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며, 계속하여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갱신신고 필요

◆ 협조사항 : [별첨 7] 참고하셔서 그린바이오 기업체에 홍보 바랍니다.

(담당자 : 최은유 ☎ 390-7920)

- 신청기간 : 2025. 7. 14.(월) ~ 7. 31.(목) ※ [별첨 8] 참고
- 신청방법 : **산업팀 방문 신청**
- 대상품목 : 녹두
-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대상 품목(녹두)를 2011년 8월 1일 이전부터 생산
 - 2024년도에 지원대상 품목(녹두)를 재배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한 자
- 신청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2024년에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생산·판매 증빙서류,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계약재배 확인 서류 등)
 - FTA 발효일(2011.8.1.)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해당 연도의 생산·판매 증빙서류,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계약재배 확인 서류 등)
- ◆ 협조사항 : ‘녹두’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안내 및 홍보 바랍니다.

민원팀(2건)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담당자 : 조정우 ☎ 390-7923)

○ 추진기간 : 2025. 7. 21. ~ 11.26.(129일간)

추진내용	일정	
◇ 비대면-디지털 조사(정부24앱)	7.21.~8.31.	42일
◇ 방문 조사(사전준비 및 실시)	7.21.~10.23.	95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 실시, 대상자 명단 준비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병행 실시)	7.21.~8.31.	42일
② 대상자 명단 출력 후 대상자 조사 ^{이·통장}	9.1.~10.13.	43일
③ 주민등록이 실제와 다른 자에 대한 확인조사 ^{공무원}	10.14.~10.23	10일
◇ 지자체 표본 점검	9.1.~10.23.	53일
◇ 주민등록표 직권조치(정리)	10.24.~11.20	28일

1. 비대면-디지털 조사

(7.21.~8.31.)

- (방식)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 사실조사 내용 직접 답변
 -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비대면조사 사전 안내로 참여 유도
 - *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응답 가능
- (내용) 세대주 정보 및 세대원 정보 사실여부 확인 등

◆ 협조사항 : 마을 주민들께 홍보 바랍니다.

(담당자 : 조정우 ☎ 390-7923)

- 납 부 기 간 : 2025. 7. 16. ~ 7. 31.
- 과세기준일 : 2025. 6. 1. 현재 소유자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
 -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등기 미이행 및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높은 자)
- 과 세 대 상 : 주택(단독,아파트,연립 등), 건축물(상가,창고 등)
 - ※ 주택분 20만원 초과 시 7월에 1/2, 9월에 1/2 부과
- 부 과 현 황 : 817건 / 71,199천원
- 납 부 방 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 납부
 -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 가상계좌입금, 신용카드납부(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능)
 - 스마트고지서 납부

◆ 협조사항 : 마을 주민들에게 납부 안내 바랍니다.

【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운영】

- 운 영 기 간 : 7. 15. ~ 9. 30.
- 과년도체납액 : 33,769천원
- 상반기징수액 : 12,298천원
- 하반기목표액 : 10,000천원

보건지소(3건)

1

지역사회 건강조사

(담당자 : 차진희 ☎ 390-7935)

- 기 간 : 2025. 5. 16. ~ 7. 31. / 77일간
- 대 상 : 만 19세이상 성인
- 조사기관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질병관리청 지정대학)
- 조사내용
 -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관련 총 19개 영역 180개 문항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구강, 정신, 여성 건강 등)
- 조사방법 : 조사원 가정방문 1:1 면접조사
 - 답례품 1만원 상품권 지급

지역사회건강조사 Q&A

- ▶ 우리 집에 방문한 사람이 조사원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본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장성균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합니다.



2025년 5월 16일~7월 31일 보건소 조사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



안전의식 의료이용
비만 구강건강
예방접종 당뇨병
음주 고혈압
식생활 흡연
신체활동 경제활동

조사
내용

※ 보이스피싱 주의! 금전적 요구 및 조사 내용과 관계없는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390-8340)

2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안내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60세 이상 치매치료제 복용자)
- 신청장소 : 치매안심센터
- 내 용 : 치매 진료비 · 약제비 월 3만원 내 실비 지원
-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약처방전, 통장사본
 - ※ 진단서 : 진단명, 진단코드, 치매척도검사GDS 또는 CDR점수 기재요망)
- 지원절차 : 신청 ➡ 심사 ➡ 지원

3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안내

- 대 상 : 관내 거주하는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 방 법 : 환자 및 보호자 치매안심센터 방문 수령
- 내 용 : 등록 후 1년간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요실금팬티 등)
 - (가족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대상자, 가족)
 -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보호사 재직증명서, 신분증(대상자, 요양보호사)
-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390-7162)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하세요!

무더울 땐 이렇게 건강을 챙기세요!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가급적 낮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가벼운 옷차림과 물병을 휴대하세요.



냉방기기 사용 시 적정 실내온도
(26℃~28℃)를 유지하고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하세요.



물을 자주 마시고, 카페인이나 당분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자제하세요.

* 신장질환자의 경우 의사와 상담 후 물을 마시세요.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커튼 등으로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하세요.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하세요!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되면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세요.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물을 천천히 마셔
수분을 보충하세요.



119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처**



119 중앙응급구조대

구조, 구급 등 긴급상황 시 연락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건강상담과 복지생활 지원요청

별첨 2

민생소비쿠폰 지급 안내(1차)

지원대상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
지급규모		•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한부모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지급 - 비수도권 지역 국민들에게 1인당 3만원, 농어촌(시·군) 인구감소지역 국민들에게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 ※ 2차의 경우 90%의 국민들(소득 상위 10% 제외)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모바일카드형) 중 선택
지급시기		7.21.(월) 지급 개시
대상자 사전안내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시 안내(요청 7.14.(월)~, 알림 7.19.(토)~)
신청주체	본인신청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대리신청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주민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요일제 시행		• 범위: 대상자 조회(카드사·상품권 온·오프라인 조회, 주민센터 방문조회), 지급신청(카드사·상품권 온·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이의신청(국민신문고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식: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온라인은 모두 / 오프라인 불가 • 기간: 첫 주 요일제 적용 ※ 지자체 오프라인 신청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결정
지원금 사용	업종	• (지역사랑상품권) 기존 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제외
	지역	특광역시·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세종, 제주 포함),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원칙
	기한	~ '25.11.30.(일)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기한이 달리 정해져 있으나, 11.30.(일)까지 사용을 권고

	유형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지자체 신청(상품권·선불카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모바일카드형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지류형 상품권, 선불카드)
	기간	7.21.(월)~9.12.(금)	7.21.(월)~9.12.(금)	7.21.(월)~9.12.(금)	7.21.(월)~9.12.(금)
지 원 금 신 청	절차	①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①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①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등)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	①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신청서 입력	②신청서 작성	②신청서 입력	②신청서 작성 ※ 지급수단 선택
		③(카드사) 신청 접수	③(은행) 신청서 접수	③(상품권업체) 신청서 접수	③(지자체) 신청서 접수
		④(카드사) 사용 승인, (문자 등으로) 충전 알림	④(은행) 사용승인, 충전 알림	④(상품권업체)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④(지자체) 지급준비 알림
					⑤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수령 ※ 지류형 상품권은 8월이후 지급 가능 ※ 차상위,수급자 등은 선불카드 20만원으로 정해져 지급불가
이 의 신 청	처리 방식	- 접수: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 심사: 관할 시·군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유관기관의 정보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 처리, 필요시 「이의신청 심의기구」 심사			
	절차	①(신청인) 국민신문고 접속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읍면동) 관련 자료 시군구에 전달 ※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은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로 바로 전달 ③(시군구) 대상자 여부 재심사 ④(읍면동)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기간	'25.7.21.(월) ~ '25.9.12.(금) ※ 이의신청 처리: ~'25.9.26.(금)			
민원 대응 (콜센터)		- 국민콜 110 (권익위) - 전담 콜센터 운영(50명, 4.5개월간 운영)			

2025년도 복지할인가구 대상 고효율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안내

광고문보기



사업개요

목 적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주는사업

예 산 125억원(전력산업기반기금)

기 간 구매기간 : 2025. 1. 1 ~ 2025. 12. 31
신청기간 : 2025. 2. 17 ~ 2025. 12. 31
▶ 예산소진 시 사업조기 종료

지원대상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9개 유형)** * 1~3등급만 해당

① 장애인*	④ 차상위계층	⑦ 출신가구
② 국가상약 독립유공자	⑤ 사회복지시설	⑧ 대가족
③ 기초생활수급	⑥ 생명유지장치	⑨ 3자녀이상가구

※ 구역전기사업자 지역 내 고객은 해당 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지원기기

◎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소비효율등급 가전제품 11종**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기준일" 2가지 모두 충족 필수

품목	등급	기준일	품목	등급	기준일	
냉장고	1	'18.4.1	공기정화기	1	'18.1.1	
김치냉장고	1	'17.7.1	TV	1	'18.1.1	
에어컨	벽걸이	1	18.10.1	제습기	1	'16.10.1
	그 외	1~3				
세탁기	일반	1~2	'18.7.1	의류건조기	1	'20.3.1
	드럼	1				
전기밥솥	1	'18.4.1	식기세척기	1	'25.1.1	
진공청소기(유선)	1~3	'19.1.1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5년부터 냉온수기 지원 제외
- 기준일(적용기준시행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지 원 금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일정 비율 (※ 30% ※ 15%)
- 지원한도 : 가구당 30만원
(지원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 과거년도 포함 가구당 지원한도)

신청방법

- STEP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청구분
[대상자 본인, 가구원, 복지시설], 약관동의
- STEP 2** 계좌 등록 및 복지할인 대상 여부 확인
- STEP 3** 구매정보 입력 및 구매 증빙서류 첨부
- STEP 4**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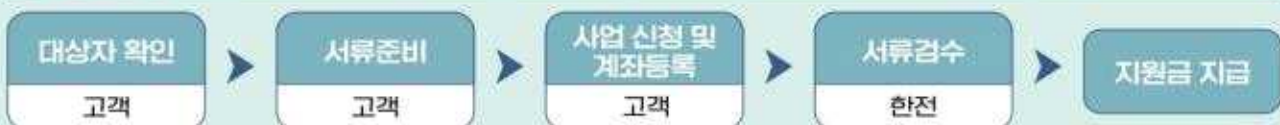
신청서류

◎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명판사진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지원 제외

◎ 사업기간내 구매 및 신청이 모두 완료되지 않을 경우
◎ 복지할인 대상자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복지할인 대상자 본인 또는 등본상 가구원이 구매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지원제외 대상은 신청 홈페이지 참고

사업절차



신청방법

◎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https://support.kepco.co.kr>) 접속 후 신청
◎ 문의처 : ☎ 1551-1212

〈현 행〉

〈개 정〉

〈신 설〉	⇒ ▪ 정의 ○ (폭염)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 (폭염작업) 폭염으로 인해 측정된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
▪ 사업주의 보건조치 ○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시 적절한 휴식 부여	▪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습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상시 비치 - 폭염·고열작업 시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주지 ② 31℃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 (공통) ①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②폭염·고열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의심 시 소방관서 등에 신고 - (실내) ①냉방·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②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③적절한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조치(단, ① 또는 ②의 조치에도 폭염작업 계속 시 ③ 조치) - (옥외) ①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②적절한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조치(단, ①의 조치에도 폭염작업 계속시 ② 조치) ③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 (원칙)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 (예외) 연속공정 등 작업 성질상 휴식시간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시 ④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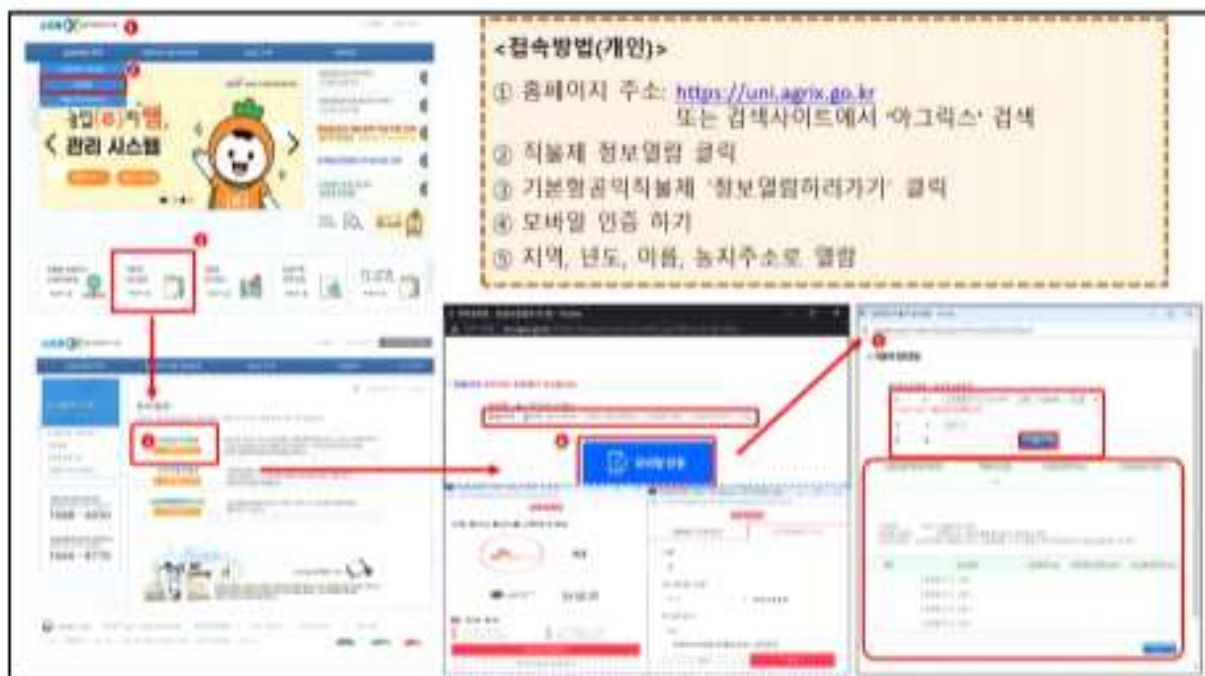
* 산안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시행으로 보건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

별첨 5

전략작물, 기본형공익 직불금 등록정보 접속 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농림사업도우미 → 정보열람(전략,기본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접속방법



<접속방법(개인)>

- ① 홈페이지 주소: <https://uni.agrix.go.kr>
또는 검색사이트에서 '아그릭스' 검색
- ② 직불제 정보열람 클릭
- ③ 기본형공익직불제 '정보열람하러가기' 클릭
- ④ 모바일 인증 하기
- ⑤ 지역, 년도, 이름, 농지주소로 열람

◆ 지자체 등 배너 링크용 URL 주소

<https://uni.agrix.go.kr/webportal/apply/riceIncomeInfoLoginRBPop.do?gb=basic>



<접속방법(지자체 배너)>

- 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 배너 클릭하여 정보열람 페이지 바로 접속
(접속주소 <https://uni.agrix.go.kr/webportal/apply/riceIncomeInfoLoginRBPop.do?gb=basic>)
- ② 모바일 인증 하기
- ③ 지역, 년도, 이름, 농지주소로 열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접속방법

<접속방법(개인)>

- ① 홈페이지 주소: <https://uni.agrix.go.kr>
또는 검색사이트에서 '아그릭스' 검색
- ② '본인 기본적불 신청 정보 조회' 클릭
- ③ 신청 정보로 휴대폰 인증 하기
- ④ '등록증 조회' 버튼 클릭
- ⑤ 본인 정보 조회

◆ URL 주소를 통한 접속방법

<https://uni.agrix.go.kr/docs17/Etc/mobileChk/G4cMobileReqDoc.do>

<접속방법(URL)>

- ① 정보열람 페이지 바로 접속
(접속주소: <https://uni.agrix.go.kr/docs17/Etc/mobileChk/G4cMobileReqDoc.do>)
- ② 신청 정보로 휴대폰 인증 하기
- ③ '등록증 조회' 버튼 클릭
- ④ 본인 정보 조회



원산지표시종합안내
QR코드를 검색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원산지표시제도 문의 및 부정유통 신고 1588-8112"

원산지 표시 대상자는?

- ❶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 ❷ 생산·가공하여 출하, 판매(통신판매 포함) 하거나
- ❸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입니다.

* 국산 농산물 222 품목, 수입 및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 품목,
국내 제조·가공한 농산물 가공품 280 품목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1 참고)



1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기본) 표시기준

◆ 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

*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임

예시

올바른 표시 : 고사리(국산),
고사리(충청북도), 고사리(보은군)

올바르지 않은 표시 :
고사리(치악산), 고사리(덕곡리)

◆ 외국산일 경우

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 표시
(「대외무역법」에 따름)

* 수입완제품(수입가공품)의 경우도 「대외무역법」 기준으로 원산지 표시

예시

올바른 표시 :
돼지고기(칠레), 쇠고기(미국)

올바르지 않은 표시 :
돼지고기(유럽산), 쇠고기(워싱턴)

(상황별) 표시기준

◆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하는 경우

① 국내에서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경우

-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
-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비율 표시

예시

쌀(이천시 40%, 철원군 25%, 파주시 20%, 원주시 15%)을 혼합한 경우
▶ 쌀(국산) 또는 쌀(국내산), 쌀(이천시 40%, 철원군 25%, 파주시 20%)



② 국산(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 표시

예시

팥(국산 40%, 중국산 30%, 미국산 20%, 태국산 10%)을 혼합한 경우
▶ 팥(국산 40%, 중국 30%, 미국 20%)



◆ 이식·이동 등에 따른 원산지 변경 여부

① 원산지 미변경

-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성장시킨 경우

예시

— 인삼, 도라지 등 작물체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
▶인삼(중국), 도라지(중국)



② 원산지 변경

-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

예시

— 수입 마늘·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
▶마늘(국산), 마(국산)



③ 원산지 전환

- 가축을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서 사육하다 도축한 경우

* 소 : 6개월 / 돼지·양·염소 : 2개월 / 그 외 가축 : 1개월(원산지 표기 시 출생국 함께 표시)

** 국내에서 출생·사육·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함

예시

— 돼지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2개월 사육 후 도축
▶돼지고기(원산지 : 국산, 출생국 : 미국)



- “표고버섯”의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 표시

예시

—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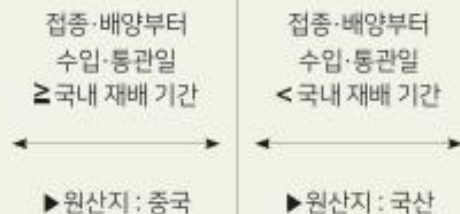
중국에서 종균접종 후 배양

통관 후 국내에서 재배·채취

접종·배양

수입·통관

채취



표시방법

국산 농산물, 수입 및 반입 농산물은 아래 기준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 ① 원칙 : 제품 포장재에 해당 원산지를 직접 인쇄
- ② 허용 :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 가능

구분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표시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 가능
글자크기	1. 포장 표면적이 3,000cm ²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2. 포장 표면적이 50cm ² 이상~3,000cm ²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3. 포장 표면적이 50cm ²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①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구분	제작기준	글자크기
풋말	가로8cm x 세로5cm x 높이5cm 이상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
안내표시판	진열대 가로7cm x 세로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14cm x 세로10cm 이상	
스티커(상품에 부착)	가로3cm x 세로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20포인트” 이상
일괄 안내표시판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사용 불가)	가로14cm x 세로10cm 이상	

2 국내 제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기본) 표시기준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물, 주정, 당류(당류가공품 포함), 식품첨가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 제외]

◆ 배합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① 1순위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 1순위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

예시

미국 밀가루 98%, 국산 소금 2%를 혼합하여 부침가루를 제조한 경우
▶ 부침가루 : 밀가루(미국)

② 1순위, 2순위 원료 합이 98% 이상인 경우

- 1, 2순위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

예시

국산 찹쌀가루 76%, 중국산 쌀 22%, 중국산 찹기름 1%, 국산 소금 1%를 혼합하여 바람떡을 제조한 경우
▶ 바람떡 : 찹쌀가루(찹쌀 : 국산), 쌀(중국)

③ 그 외의 경우

- 1, 2,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 표시

예시

호주 밀가루 60%, 국산 쌀 20%, 중국산 동부 10%, 국산 소금 5%, 설탕 5%를 혼합하여 말빵을 제조한 경우
▶ 말빵 : 밀가루(호주), 쌀(국산), 동부(중국)

◆ 김치류 및 절임류의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① 고춧가루(고춧가루 가공품 포함)를 사용한 김치류

- 고춧가루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② 고춧가루(고춧가루 가공품 포함)를 사용하지 않는 김치류

-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③ 절임류

-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



◆ 원료 배합비율 순위가 중복되는 경우

① 순위가 중복되는 원료들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

예시 — ① A원료 30%, B원료 30%, C원료 25%, D원료 15%
▶ 1순위(A, B), 3순위(C) 원료 원산지 표시

예시 — ② A원료 30%, B원료 20%, C원료 20%, D원료 20%, E원료 10%
▶ 1순위(A), 2순위(B, C, D) 원료 원산지 표시

예시 — ③ A원료 30%, B원료 25%, C원료 15%, D원료 15%, E원료 15%
▶ 1순위(A), 2순위(B), 3순위(C, D, E) 원료 원산지 표시

◆ 농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

① 배합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예시 — **고추장**: 국산 찹쌀 50%, 호주산 밀가루 30%, 중국산 혼합양념 15%,
중국산 고추 5%를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 **고추장**: 찹쌀(국산), 밀가루(호주), 혼합양념(중국), **고추(중국)**
* 고추는 배합비율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니어도(3순위외의 원료) '고추'라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고추의 원산지를 추가적으로 표시해야 함
** 원산지 표시대상이 수입원제품인 경우 가공품 자체(혼합양념)의 원산지를 표시(「대외무역법」에 따름)

② 제품명에 사용된 농산물의 원산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3순위 외의 원료로서 1) 농식품부 고시 원산지 표시대상(663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물·주정·당류·당류가공품·식품첨가물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 복합원재료가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 ** 복합원재료가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지만, 해당 원료가 복합원재료 내에서 5순위 외의 원료일 경우
- *** 복합원재료 내 원료가 복합원재료로서 원료명을 생략한 경우
- 다만, 원재료명 표시가 생략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명을 표시할 경우, 원산지도 함께 표시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 표시해야 함

알아두기



농산물 명칭이란?

「농축수산물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정의된 품목에 따른 명칭 참조

예시 — 농산물 명칭인 것: 쌀, 고추, 쇠고기, 사과, 당근, 고구마, 우유 등
농산물 명칭이 아닌 것: 김치, 한과, 치즈, 고기, 과일, 야채 등

◆ 복합원재료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① 국내에서 가공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 표시 *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 표시 가능

예시

—— 광가네 양념장 원료 구성

1순위 복합원재료

된장 40%

원료 구성성분 : 호주산 콩 60%, 미국산 밀가루 40%

원산지 표시대상 : 호주 콩, 미국 밀가루

2순위 복합원재료

고추장 30%

원료 구성성분 : 국산 찹쌀 40%, 중국산 고추 40%, 미국산 밀가루 20%

원산지 표시대상 : 국산 찹쌀, 중국 고추

3순위 원료

콩 15%

원료 구성성분 : 국산 콩 100%

원산지 표시대상 : 국산 콩

3순위 외 원료

양파 5%, 마늘 5%, 고추 5%

원료 구성성분 : 국산 양파 100%, 중국산 마늘 100%, 중국산 고추 100%

원산지 표시대상 : 해당 없음

▶ 원산지 표시 : 광가네 양념장

[된장(콩 : 호주, 밀가루 : 미국), 고추장(찹쌀 : 국산, 고추 : 중국), 콩(국산)]

*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1가지 원료 표시



② 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

-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1가지 원료와 고춧가루 표시

예시

—— 매콤 김치만두

1순위 원료

*수입완제품

밀가루 40%

원산지 표시대상 : 캐나다 밀가루

2순위 복합원재료

배추김치 20%

원료 구성성분 : 국산 배추 40%, 국산 무 30%,

국산 고춧가루 20%, 국산 소금 10%

원산지 표시대상 : 국산 배추, 국산 고춧가루

3순위 원료

*수입완제품

빵가루 20%

원산지 표시대상 : 미국 빵가루

3순위 외 원료

돼지고기 10%, 대파 5%, 고추 5%

원료 구성성분 : 국산 돼지고기 100%, 국산 대파 100%, 중국산 고추 100%

원산지 표시대상 : 해당 없음

▶ 원산지 표시 : 매콤 김치만두

[밀가루(캐나다), 배추김치(배추 : 국산, 고춧가루 : 국산), 빵가루(미국)]



③ 수입한 복합원재료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

- 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 표시(『대외무역법』에 따름)

(상황별) 표시기준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할 경우

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

예시

— 맛나 야채죽

1순위

원료

쌀 80%

원료 구성성분 : 국산 40%, 중국산 40%, 미국산 20%

원산지 표시대상 : 국산 40%, 중국 40%

2순위

원료

당근 10%

원료 구성성분 : 국산 당근 100%

원산지 표시대상 : 국산 당근

3순위

원료

대파 10%

원료 구성성분 : 국산 대파 100%

원산지 표시대상 : 국산 대파

▶ 원산지 표시 : 맛나 야채죽

[쌀(국산 40%, 중국 40%), 당근(국산), 대파(국산)]



◆ 동일 원료의 혼합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① (원칙) 혼합 비율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하여 표시

- 혼합 비율의 변경 폭이 최대 15% 이하이면 종전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② (허용) 혼합 비율 생략이 가능한 경우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 표시

-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 최근 1년 동안에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 혼합 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 단, 국내산 혼합 비율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혼합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① (원칙) 원산지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하여 표시

② '외국산(A·B·C국 등)' 또는 '외국산(국가명은 00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 가능한 경우

-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원료 원산지가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신제품으로 원료 원산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②-① '외국산(A·B·C국 등)'으로 표시하였을 경우 포장재에 직접 표시한 국가 이외의 원산지 원료로 변경된 경우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포장재 사용 가능

②-② '외국산(국가명은 00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하였을 경우

- 원산지는 QR코드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
-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발생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추가해야 함
- 원산지 표시내용은 생산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해야 함

③ '외국산'으로만 표시 가능한 경우

-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6개국을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복합원재료 내 원료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포함)



◆ 국산(국내산)으로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사용된 원료 중 물, 주정, 당류(당류가공품 포함),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 국산(국내산)일 경우

표시방법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농산물 가공품 및 수입 및 반입 가공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 ① 원칙 : 제품 포장재에 해당 원산지를 직접 인쇄
- ② 허용 :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 가능

구분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위치	· 국내 제도가공품: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 *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되,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 수입·반입 가공품: 정보 표시면 원산지란에 표시
표시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 가능
글자크기	1.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u>진하게(굵게)</u> 표시 *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경우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 2.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가능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의 바탕색이 투명한 경우 내용물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①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구분	제작기준	글자크기
풋말	가로8cm x 세로5cm x 높이5cm 이상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
안내표시판	진열대 가로7cm x 세로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14cm x 세로10cm 이상	
스티커(상품에 부착)	가로3cm x 세로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20포인트" 이상
일괄 안내표시판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사용 불가)	가로14cm x 세로10cm 이상	

3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

공통 사항

표시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 가능
글자 위치·크기·색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 *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

(통신매체별) 표시사항

◆ 전자매체 이용(인터넷, 배달앱, TV 등)

	표시위치	표시시기	글자크기	글자색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			
허용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첫 화면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 가능 ※ 첫화면이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	대상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기준)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 별도의 창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표시 가능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표시위치	글자크기	글자색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이상	
허용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 가능	광고면적 기준 8~20포인트 이상 * 농산물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준용 가능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배달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표시 방법	원칙	농산물, 가공품 등의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
	허용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알아두기



통신판매의 정의와 범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 중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

4 벌칙

◆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분 기준

① 형사처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위반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② 과징금 : 위반금액의 4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

③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④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처분 기준

구분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1차	2차	3차
과태료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미표시	5~1,000만원 이하 * 농산물 가공품 제조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20~1,000만원 이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5~1,000만원 이하)		
위반업체 공표	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공표(공표 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교육 이수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국산(국내산) 농산물 : 222품목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품목류	대상품목
미곡류(6)	쌀, 찰쌀, 현미, 벼, 발벼, 찰벼
맥류(6)	보리, 보리쌀, 밀, 밀쌀, 호밀, 귀리
잡곡류(6)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울무
두류(7)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기타콩
서류(3)	감자, 고구마, 아콘
특용작물류(6)	참깨, 들깨, 땅콩,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과일과채류(6)	수박, 참외, 메론,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과채류(2)	호박, 오이
엽경채류(6)	배추·양배추(포장된 것), 건 고구마순, 건 토란대, 쑥, 건 무청(시래기)
근채류(7)	무말랭이, 무·알타리무·순무(포장된 것), 당근, 우엉, 연근
조미채소류(10)	양파, 대파·쪽파·실파(포장된 것), 건고추, 마늘, 생강, 풋고추, 파리고추, 홍고추
양채류(3)	피망(단고추), 브로콜리(녹색꽃양배추), 파프리카
약용작물 (약재)류(66)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수오, 백지, 백출, 비자, 사삼, 양유(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충청갈고리동굴레), 옥죽/외유(동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녹용, 녹각
과실류(28)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뽕은감, 꽃감, 자두, 살구, 참다래, 파인애플, 감귤, 만감(한라봉 포함), 레몬, 탄제린, 오렌지(청견 포함), 자몽, 금감, 유자, 버찌, 매실, 앵두, 무화과,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오디
수실류(6)	밤, 대추, 잣, 호두, 은행, 도토리
버섯류(15)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인삼류(2)	수삼(산양삼, 장뇌삼, 산삼배양근 포함), 묘삼(식용)
산채류(8)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도라지, 더덕, 마
육류(12)	쇠고기(한우, 육우, 젓소),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화훼류(11) * 절화에 한함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기타(6)	벌꿀,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식용란(닭, 오리 및 메추리의 알), 뽕잎, 누에뱀데기

농산물 가공품 : 280품목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225)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4)	과자, 캔디류(양갱), 빵류, 떡류
빙과류(2)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9)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당류(3)	엿류(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잼류(2)	잼, 기타잼
두부류 또는 묵류(4)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용유지류(30)	식물성유지류[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류(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류),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류), 땅콩기름(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류, 아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기타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면류(4)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
음료류(18)	다류(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과일·채소류음료[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두유류(원액두유, 가공두유), 발효음료류(유산균음료, 호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음료베이스)
특수용도식품(9)	조제유류(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특수의료용도식품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신·수유부용 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장류(14)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조미식품(9)	식초(발효식초, 회석초산),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절임류 또는 조림류(5)	김치류(김치숙, 김치), 절임류(절임식품, 당절임), 조림류
주류(11)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농산가공식품류(14)	전분류(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류(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편발, 호소식품, 기타 농산가공품류(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12)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

알가공품류(9)	알가공품(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유가공품(35)	우유류, 가공유류(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산양유, 발효유류(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버터유, 농축유류(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유(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치즈류(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유청류(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5)	기타식육, 기타알제품, 기타 동물성가공식품 , 추출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별꽃 및 화분가공품류(4)	로열젤리류(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 화분가공식품(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즉석식품류(17)	생식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새싹채소 등), 즉석조리식품(국, 탕, 스프 등), 만두류(만두, 만두피), 간편조리세트
기타식품류(2)	효모식품, 기타가공품
장기보존식품(3)	병·통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②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55)

영양성분(3)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기능성원료(51)	인삼(백삼, 태극삼), 홍삼, 엽록소함유식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폴리스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밀크씨슬(카르투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달맞이꽃종자추출물, 레시틴,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옥타코사놀함유유지, 매실추출물, 공액리놀레산, 유코다당·단백(축산물을 원료로 한 것),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귀리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식이섬유,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아카시아검), 옥수수겨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 호로파종자식이섬유,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 홍국, 대두단백, 홍경천, 빌베리, 마늘, 유단백가수분해물, 상황버섯추출물, 토마토추출물, 곤약감자추출물, 회화나무열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라피노스
기타(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 원산지표시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을 주원료 또는 주성분으로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신고를 하여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표시 대상으로 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수입 및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별표 1 참고

그린 바이오 기업 신고제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방법

근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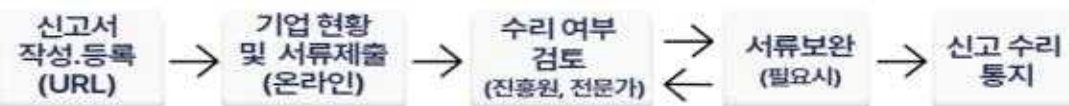
접수시기

2025년 3월 4일부터

신고주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고절차



구비서류

1.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신고서)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4.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번호 제외)

신고방법

구비서류 갖춘 후 <신고 접수> 클릭

신고 접수

수리통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e메일 발송)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 063-919-1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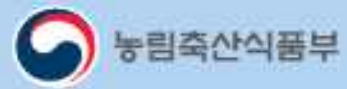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Korea Agriculture Technology Promotion Agency

지역(시군)	소재지	기업명	대표자명
장성군	북일면	이엘에스	윤*학
장성군	북일면	흙사랑	백*호
장성군	북일면	세광	정*순
장성군	북일면	세광	배*숙
장성군	북일면	농업회사법인 송정농원	변*니
장성군	북일면	제주벨트	김*호
장성군	북일면	포레스트에너지	장*영
장성군	북일면	도원조경건설	김*웅
장성군	북일면	해광	김*자
장성군	북일면	창일	백*경
장성군	북일면	명승강화유리	최*철
장성군	북일면	명성엔지니어링	신*호
장성군	북일면	농업회사법인 장성주조	구*운
장성군	북일면	이케이	백*곤
장성군	북일면	양영	김*곤
장성군	북일면	광주유로폼	박*훈
장성군	북일면	엘로우덕진	조*욱
장성군	북일면	엘에이치	이*호
장성군	북일면	동신안전유리공업	신*한
장성군	북일면	우성산업	김*택
장성군	북일면	화정태양광발전소	
장성군	북일면	청운리싸이클링	정*천
장성군	북일면	신세계	박*금
장성군	북일면	대오산업	최*수
장성군	북일면	선일금속	전*구
장성군	북일면	정에너지	박*연
장성군	북일면	신흥	전*호
장성군	북일면	부성건설기계공업사	김*모
장성군	북일면	금광에너지태양광발전소	박*규
장성군	북일면	플러스태양광발전소	김*모
장성군	북일면	편백365	황*일
장성군	북일면	성산6호 태양광발전소	변*연



2025
FTA
Free Trade Agreement

신청
안내

피해보전직불금

2025년 6월 23일~8월 1일

신청장소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FTA이행지원센터(1899-4114)



202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What?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은 **녹두**입니다.



Who?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녹두를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
- **2024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증명 서류(본인이 준비해야 함)
 1. 2024년에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24년도에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증빙 서류,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계약 재배 확인 서류 등)
 2.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증빙 서류,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계약 재배 확인 서류, 생산사실 확인서 등)
 3.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 ※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TA이행지원센터(<https://www.krei.re.kr/support/index.do>)

사업 추진 절차



202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Q

1.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서로 다른 지역(시·군·구)에서 생산되는 경우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A. 생산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 속한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Q

2. 토지 소유자와 재배자가 다른 경우, 누가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4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입니다. 즉, 생산된 농산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의 임금·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작물을 위탁 재배한 경우는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3. 신청 내용과 지자체의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확인 결과 통보를 받은 직후 1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4. 금년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도 피해보전직불금은 표지에 안내된 신청기간(2025. 6. 23. ~ 8. 1.)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KREI FTA이행지원센터 **1899-4114** |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M E M O